

평생교육원운영규정

제정 1997. 2.26 개정 2002. 9. 1
 개정 2003. 5. 1 개정 2010. 7. 1
 개정 2013. 5. 1 전부개정 2013.12. 4
 개정 2014.11.19 개정 2015. 9.24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대학의 교육이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생직업능력 배양 및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고, 나아가 지역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원은 국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본 원”이라 칭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소재지) 본 원은 국제대학교 내에 두며, 필요시 분원을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본 원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
2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
3. 국책 및 공공기관 선정 평생교육사업
4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학점은행제 활용을 통한 학위과정 운영
5. 이주자와 외국인 대상 다문화 교육사업
6. 평생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행사의 개최
7. 기타 평생교육 이념 구현에 관련되는 사업

제5조(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) ① 본 원은 평생교육 정규과정,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, 평생학습육성 사업에 필요한 과정 등을 개설 운영한다.

② 전 항과 관련된 각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사항은 학기별 평생교육원장(이하 ‘원장’이라 함)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. 다만, 각 교육과정별 계획 및 결과 보고가 필요한 경우 원장은 프로그램 개설 전·후 시기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그 외 본 원의 교육과정 중 외부기관 위탁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정을 받아 개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6조(수업) 본 원의 수업은 각 교육과정의 상황 및 교육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주간, 야간, 주말과 휴일 및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다.

제2장 수강과 등록

제7조(등록시기) 본 원의 수강 및 등록 시기는 각 교육과정별 일정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수강자격) 본 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개설 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 또는 학력의 제한을 둘 수 있으며, 교수학습과정을 해치는 자에 대해 수강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제9조(선발방법) 본 원의 수강생은 각 교육과정별 학습수용 능력과 서류전형 등을 기초로 하여 접수순

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지침에 의거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, 면접 등 별도의 선발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수강료) ① 본 원의 수강생은 원장이 정하는 각 교육과정별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본 원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학사운영

제11조(학습연한) 본 원의 학습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원장이 학습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육과정) 본 원 각 영역별 교육과정은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교육과정평가) 본 원의 각 영역별 교육과정 평가 등은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자체평가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료증 수여) 본 원의 각 교육과정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1에 해당 프로그램의 수료증을 교부한다. 다만, 외부기관 위탁강좌와 공공기관 지정강좌는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징계 및 상벌) ① 본 원의 수강생은 본 원의 규정과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

② 본 원의 수강생 중 품행이 바르고,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

제15조의1(장학금) 특별히 장학 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기구 및 직제

제16조(구성) 본원에는 원장, 부원장 및 교학실장을 두고 필요한 교원, 교직원 등을 둔다.

제17조(원장 및 부원장) ①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며 교육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한다.

② 원장은 및 부원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8조(교학실장) ① 교학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교학실의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교학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업무를 관장하며 일부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.

제19조(교원) ① 본 원은 운영에 필요한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임명 및 대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0조(교직원) 본 원의 교육사업 및 학사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직원을 둔다.

제21조(강사) ① 본 원의 강사라 함은 위촉강사를 말하며, 위촉강사는 본 원에서 원장이 학기별로 위촉 및 해촉한다.

② 위촉강사는 본 대학 정규 학위과정 이외에 본 원에서 개설하는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며, 보수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5장 사무분장

제22조(사무분장) 본 원의 교학실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.

1. 평생교육관련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
2.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및 학습과목 개설·운영
4.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평생교육 사업 기획 및 운영
5. 지방자치단체 위탁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금 정산보고
6. 본 원 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
7. 수강생 학사관리 및 평생교육원 통합시스템 관리
8. 각종 협약 체결 및 갱신, 사업결과 평가 및 보고
9. 전체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리 및 평가
10. 수강생 모집 및 상담, 진로지도
11. 평생교육원 홍보
12. 시설물과 기자재의 관리 및 유지, 보수
1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6장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

제23조(설치) 본 원의 운영전반에 걸쳐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)를 둔다.

제24조(구성) 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, 부원장 및 교학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대내외 전문가 중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25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편성, 운영
2.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심의
3. 본 원 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결과 심의
4. 본 원 제규정 제정 및 개정
5.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방법 및 평가
6. 기타 본 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26조(회의)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심의한다.

제7장 재정과 회계

제27조(재정) 본 원의 재정은 본 대학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의 위·수탁 보조금과 수강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8조(회계년도) 본 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9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,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0조(재산귀속) 본 원이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제8장 기타

제3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.

제32조(운영세칙) 본 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평생교육원 설립일 199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개정일) 사회교육원 개정 시행일을 1999년 3월 1일로 한다.

부칙

제 1 조(명칭변경) 사회교육원을 2002년 10월 1일부터 평생교육원이라 명칭을 변경한다.

제 2 조(개정일) 평생교육원 개정 시행일을 2002년 9월 1일로 한다.

부칙

제 1 조(명칭변경) 평생교육원을 2004년 3월 1일부터 사회교육원이라 명칭을 변경한다.

제 2 조(개정일) 사회교육원 개정 시행일을 2003년 5월 1일로 한다.

부칙

제 1 조(명칭변경) 사회교육원을 201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원이라 명칭을 변경한다.

제 2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제○○○○-○○○○

수 료 증

성 명 : 홍 길 동

년 월 일생

위 사람은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개설 운영한 아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

과 정 명 : ○○○○○과정(고급과정)

이수기간 : 0000.00.00 부터

0000.00.00 까지 (이수시수)

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장 ○ ○ ○(직인)

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0000. 00. 00.

국 제 대 학 교 총 장 ○ ○ ○(직인)